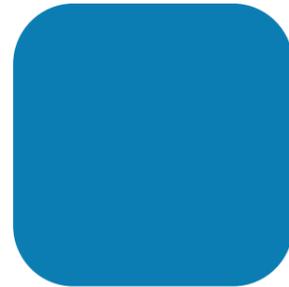




간판은 문화입니다.

간판 하나의 매력이 거리 전체의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. 걷고 싶은 거리, 문화가 흐르는 거리, 간판에서 시작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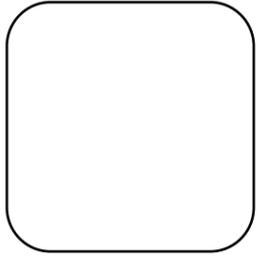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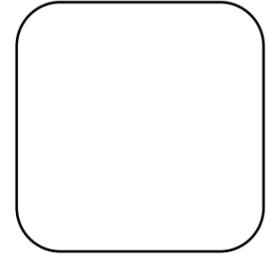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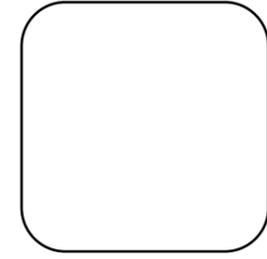


좋은 간판 만들기 10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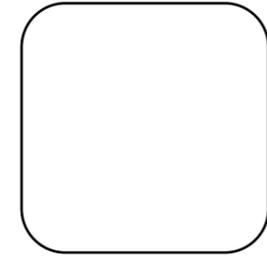
- 01 너무 크게 만들지 않는다.**
크기가 아니라 질로 승부하라. 거리의 보도 폭은 평균 3m로 간판이 너무 크면 보행자가 한눈에 보기 어렵다. 간판은 차량이 아닌 보행자 시각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.
- 02 빈 공간을 많이 확보한다.**
배경이 되는 벽면을 여유 있게 활용하는 간판이 눈에 더 잘 띈다.
- 03 글자크기를 대조시켜라.**
간판을 통해 먼저 전달할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뒤 내용만 큰 글자로 쓰는 것이 좋다.
- 04 상호명은 인상적으로 개발한다.**
재치있는 상호는 홍보효과가 뛰어나다. 함축적이고 인상에 남는 상호가 바람직하다.
- 05 알맞은 그림을 곁들인다.**
글씨보다 그림이 더 효과적인 정보전달 수단이 된다.
- 06 화려함 보다 친근함이다.**
업소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나치게 화려한 디자인은 거부감을 줄 수 있다.
- 07 너무 많이 달지 말라.**
간판이 여러 개면 전달하는 정보가 분산된다.
- 08 원색사용을 줄인다.**
원색간판들이 모이면 눈만 피로할 뿐이다.
- 09 글씨는 간판 절반 크기로 한다.**
글씨가 크다고 간판이 잘 보이는 것은 아니다. 배경이 충분할 때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온다.
- 10 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.**
조형물, 벽화, 만화 등을 활용해 유쾌한 느낌을 주도록 한다

아름다운 간판 설치 상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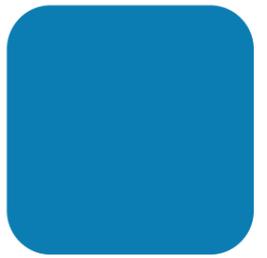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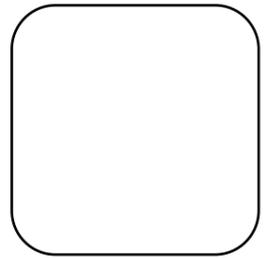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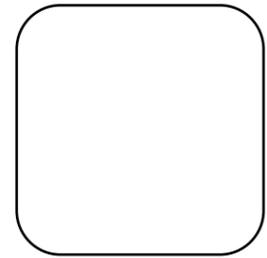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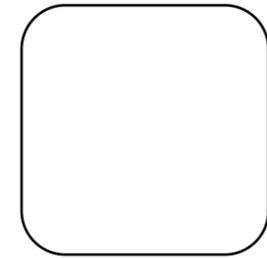
수정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031-729-5470~2



사업 **시작** 부터
좋은 간판 으로!



 성남시 수정구청



성남시 옥외광고물 가이드 라인

간판의 총수량

- 일반지역 : 1업소 2간판
- 특정구역 : 1업소 1간판
(단, 곡각지점 및 출입구가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 추가 허용)

불법광고물 설치시 처벌규정

고정광고물	
가로간판, 세로간판, 돌출간판, 지주간판, 창문이용광고	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, ●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
유동광고물	
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전단, 에어라이트	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사업시작과 함께 간판달기 과정

| 1단계 |

- 영업허가 신청서 제출 (해당 인·허가 부서)

| 2단계 |

- 옥외광고물 표시허가(신고) 신청서 제출 (각 구청 광고물관리팀)
- 구비서류
 -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
 - 광고물 설치 사용승낙서(건물주 확인)
 - 위치도(약도)
 - 건물사진 및 부착위치 표시
 - 원색도안, 설계도, 설명서

01 가로형 간판 : 허가 또는 신고대상

| 표시방법 |

- 가로
 - 최상단 광고물 : 당해건물 벽면 가로 폭의 1/2 이내
 - 3층 이하 광고물 : 당해업소 가로 폭으로 기둥 또는 창틀선 이내로 최대 10m 이내
- 세로 : 층간 벽면 폭의 80% 이내로 최대 1m 이내 (단, 0.6m 이하인 벽면의 세로길이는 100%적용)
- 두께 : 건물 벽면으로의 돌출폭 0.3m 이내
- 입체형 : 1~3층, 최상층
- 판류형 : 1층
- 소형가로형 : 2~3층 (가로길이 3m 이내로 업소의 기둥과 기둥 사이)
- 문자크기
 - 1~3층 : 0.6m 이내 (지지대는 0.25m 이내)
 - 최상층 : 5층 0.7m 기준 (4층일 경우 동일 적용, 1층 증가마다 0.1m 증가하여 최고 2m 이내)



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

| 허가대상 |

- 가로간판 (가로 10m 이상)
- 돌출간판
- 지주이용간판 (높이 4m 이상)

| 신고대상 |

- 가로간판 (5㎡ 이하 신고배제)
- 소형돌출 (병원, 약국, 이.미용실 등)
- 지주이용간판 (높이 4m 이하)
- 현수막 및 벽보 (지정계시대 이용)
- 전단
 - ※ 입간판은 어떠한 경우에도 설치 금지 (예 : 에어라이트, 베너기, 싸인볼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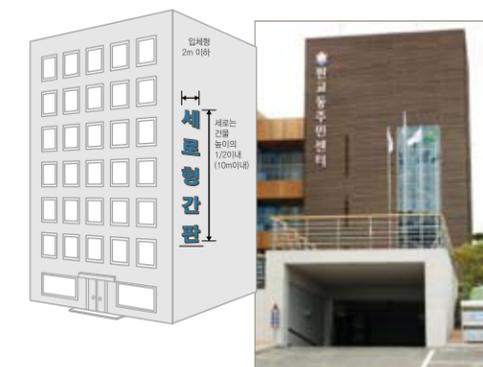
02 세로형 간판 : 신고대상

| 대상 |

5층 이상 또는 건물높이 20m 이상인 단독건물

| 표시방법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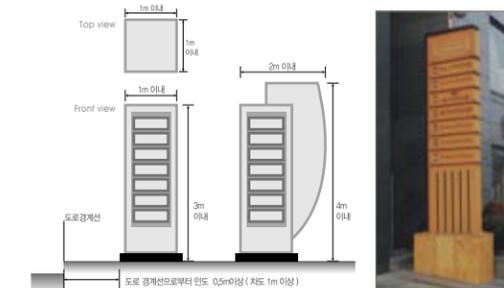
- 입체형으로 설치
- 가로 : 최대 2m 이내
- 세로 : 건물높이의 1/2 이내로 10m 이내
- 돌출폭 : 건물 벽면으로부터 0.3m 이내
- 문자 하단부의 위치를 기준
- 문자크기 : 5층 0.7m를 기준으로 1층 증가마다 0.1m씩 증가하여 최고 2m 이내



03 지주간판 : 허가 또는 신고대상

| 표시방법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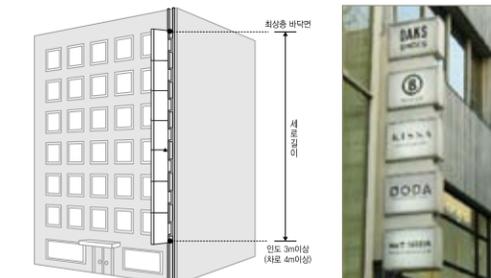
- 위치 : 당해업소 등의 건물부지 내
- 가로 : 1m 이내 (조형물형태 2m 이내)
- 세로 : 3m 이내 (조형물형태 4m 이내)
- 두께 : 1m 이내
-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: 인도 0.5m 이상, 차도 1m 이상
- 점멸, 네온, 화면변화방식 사용금지



04 돌출간판 : 허가대상

| 표시방법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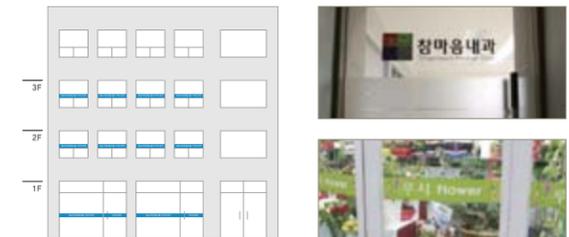
- 세로 : 2.5m 이내
- 가로 : 0.8m 이내
- 두께 : 0.3m 이내
- 돌출폭 : 건물 벽면으로부터 1m 이내
- 광고물간의 이격거리 : 10m 미만 1줄 10m 이상시 건물의 양 끝에 1줄만 추가 가능
- 광고물의 하단 : 인도 3m(차도 4m) 이상
- 광고물의 상단 : 건물의 최상층 바닥면 이내



05 창문이용광고물

| 표시방법 |

- 건물의 내·외부를 차단하거나 미관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소 또는 업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패턴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무채색(흰색, 회색 등)으로 창문을 가릴 경우에는 규격초과 가능
- 위치 : 3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
- 규격 : 세로 0.2m 이내 띠 형식으로 설치
- 재질 : PVC필름



06 현수막 및 벽보 : 신고대상

| 표시방법 |

- 위치 : 성남시내 지정계시대 이용
- 규격
 - 현수막 : 가로 8.7m, 세로 0.7m
 - 벽보 : 가로 0.35m, 세로 0.52m 이내
- 신고 : 성남시 새마을회 (701-8550, http://www.ssmu.co.kr)

간판표시 계획서 제출

| 제출부서 |

- 각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
- 시기 : 간판 및 게시시설 표시허가 신청 전

| 제출대상 |

- 바닥면적 합계가 300㎡ 이상인
 - 1층 근린생활시설
 -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
 - 판매시설
 - 숙박시설